##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4 발의연월일: 2020. 6. 25.

발 의 자:정필모·이장섭·임호선

정일영 · 이상직 · 송영길

홍정민 • 박성준 • 문진석

고영인 • 이용우 • 박재호

김진애 · 남인순 · 오영환

권인숙 • 박상혁 • 이워택

김경만 • 황운하 • 이해식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유사한 취지로 임시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타법에 맞추어 국민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 법률 제 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중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임시허가) ① ~ ⑤ (생	제37조(임시허가)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6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	
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	
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u>법령이 정비</u>	법령을 정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
	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
	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u>본다</u> .
⑦ ~ ⑫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